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8 선고 2019가단358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9. 7. 24

판 결 선 고 2019. 8. 2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119m²에 관하여 원고와 망 D 사이의 2016. 4. 8.자
소유권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1) D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비롯한 여수시 모에 소재 한 토지들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도 땅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.

이에 원고는 2003.3. 27. 토지대금으로 4,000,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.

2) D는 2016. 4. 8. 및 2016. 11. 23.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돈으로 산 땅 이니 언제든지 이전해가라고 말하였다.

3) 그런데 D는 2018. 5. 6. 사망하였고, D의 처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4) 따라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D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갑 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,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수영